

투자위험등급: 3등급
[중간 위험]

유진자산운용(주)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5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진 월지급식 Asia ex-Japan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진 월지급식 Asia ex-Japan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 합 투 자 기 구 명 칭 : 유진 월지급식 Asia ex-Japan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집 합 투 자 업 자 명 칭 : 유진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2년 07월 27일
 5. 증 권 신 고 서 효 력 발 생 일 : 2012년 08월 07일
 6. 전 환 시 행 일 : 2012년 08월 22일
 7. 모 집(매 출) 증 권의 종 류 및 수 : 10조좌
 8. 모 집(매 출) 기 간(판 매 기 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유진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가 지급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으로부터 우선 분배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익금의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원본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100%까지 잠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이 집합투자기구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월 분배금에서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목 차 (Contents)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책임운용전문인력
6. 투자실적 추이

I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2. 월분배 및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IV. 요약 재무정보

I |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유진 월지급식 Asia ex-Japan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A3776)			
(종류) 클래스	A	C	E	F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3777	A3778	A3779	A5679

2. 모집예정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으로 별도의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주1) 모집(판매) 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2-1.주요 투자대상”과 “2-2.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유진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유진투자증권빌딩 7층 (대표전화: 02-2129-3300)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이상	유진 Asia ex-Japan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②단기대출	10%이하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③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부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대상 중 ①부터 ④,⑧의 투자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진 Asia ex-Japan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집합투자증권	60%이상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포함 . 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②채권	50%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후순위채권을 포함 하며, 사모사채권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 채권 "이라 한다)
③자산유동화증권	50%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 자산유동화증권 "이라 한다)	
④어음	50%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 어음 "이라 한다)	
⑤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통화나 증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 장내파생상품 "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증권·통화나 증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 장외파생상품 "이라 한다)
⑥환매조건부매도	50%이하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같음)	
⑦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⑧증권의 차입	20%이하	증권의 차입	

※ 상기의 투자대상 외에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2.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4. 양도성예금증서
5. ②부터 ③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가. 투자대상'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대상 중 ①부터 ④,⑧의 투자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⑥부터 ⑧까지, 아래의 투자제한 ②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 상기 주요 투자대상 이외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의 국채 및 고수익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유진 Asia ex-Japan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채권(일본제외)에 주로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및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HSBC Asian High Yield Bond Index, AHBI(90%) + Call (10%)

HSBC Asia High Yield Bond Index(AHBI)는 홍콩상하이은행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하이일드 채권 지수

주1)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비교지수는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fund.eugenefn.com)에서 확인가능)

★유진 Asia ex-Japan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의 국채 및 고수익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BNP Paribas L1 Bond Asia ex-Japan Fund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높은 이자수익 및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1) 환위험관리 전략: 환헷지 전략

- 이 투자신탁은 일본의 제외한 아시아국가가 발행한 국제통화 및 현지통화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위험을 헷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헷지의 목적은 주로 선물환 계약을 통해서 투자신탁의 외국통화 자산 및 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투자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기 선물환계약에는 일정 수준의 거래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환헷지 거래는 **원달러에 한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다른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 환헷지비용은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90~100%수준이지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자산가치의 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헷지비용은 운용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 등 외화 자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기간 중에 환율이 변동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2) 투자대상 펀드 : BNP Paribas L1 Bond Asia ex-Japan Fund(국내등록일자: 2012.05.1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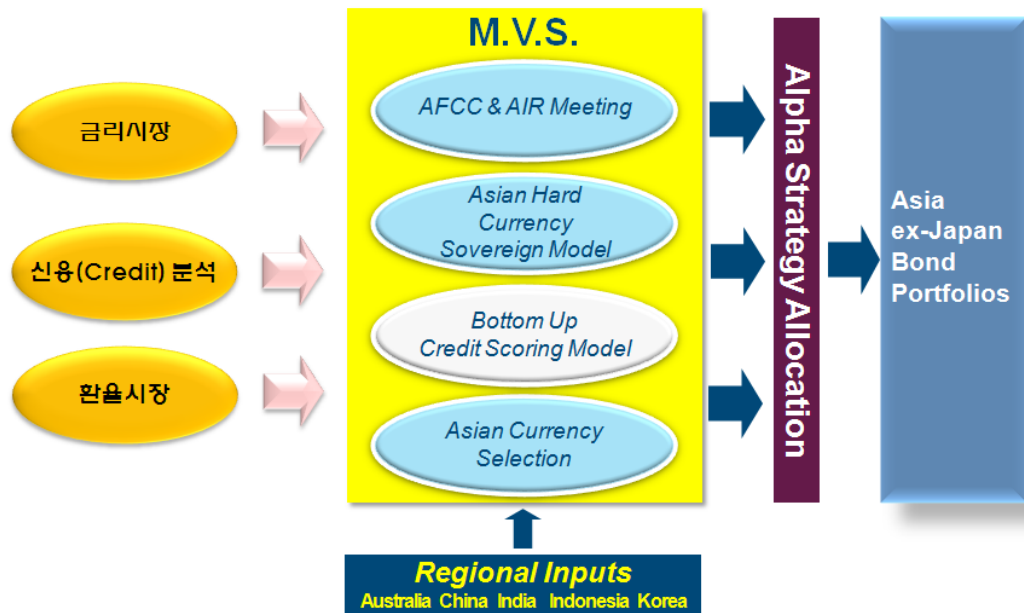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의 국채 및 고수익채권(High Yield) 등에 장기 투자하여 높은 이자수익 및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Asia ex-Japan의 채권은 주로 아시아국가(일본제외)의 정부, 정부기관, 그 산하단체 또는 행정부처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 또는 아시아국가의 정부가 소유, 통제하거나 출자한 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고수익 회사채 등을 가리킵니다.
- 고수익채권은 높은 투자위험이 수반되며, 신용등급 제한이 부과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증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도 대부분의 고수익채권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을 예정이며,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채권은 S&P로부터 BB+이하의 등급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등급을 받은 채권을 말합니다.
- 달러화대비 아시아국가 현지통화(Local Currency)간의 환차익 기회가 발생할 경우 FX전략을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Asia ex-Japan의 국제통화표시채권(Asia hard currency bonds), 현지통화표시채권(Asia local currency bonds), 국채 및 회사채(Asia government & corporate bonds), 통화(Asia Currencies)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를 통해 높은 이자수익 및 자본이득 추구



[운용프로세스]

- M.V.S. 시스템을 통해 아시아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정량적분석과 정성적분석에 의해 다각도로 정밀 분석하여 투자·운용합니다.
- BNP Paribas 글로벌 네트워크(BNPP IP Investment Network) 및 글로벌 운용지원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운용을 추구하며, 단기적인 신용 및 듀레이션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성과 위하여 낮은 변동성 대비 높은 투자수익(Risk-adjusted return with low volatility)을 추구합니다.



※M.V.S (Macro-economic, Valuation & Sentiment), AFCC(Asian Fixed Income & Currency), AIR(Asia Interest Rate)

[집합투자업자(운용회사)]

외국집합투자업자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Luxembourg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Singapore Limited ("BNPP IP Singapore")

[운용전문인력]

운용팀	BNPP IP Singapore
팀 구성원 수	4명
평균 투자경력	13년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4 (2011년 12월말 기준)
운용자산 규모	USD 478,848,551 (2011년 12월말 기준)
대표펀드매니저 및 경력	<p>Adeline Ng, CFA, FR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및 아시아 포트폴리오 담당 아시아채권 책임자 - Alpha에 집중 : 전체 아시아 알파(금리, 신용 및 외환) -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회사채(우량등급 및 하이일드)와 현지 통화 금리 관련 적극적인 투자전략 창출 - 17년의 투자경력 보유 - 경영학 학사 학위

[BNP Paribas 개요]

- 2010년말 기준 총 운용규모(투자자문 포함)는 USD 7,320억이며, 전세계에서 상위 13위의 글로벌 대형자산운용회사
- 총 44개 국가의 약 3,800명의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음
- S&P 신용등급 : AA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의 국채 및 고수익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BNP Paribas L1 Bond Asia ex-Japan Fund에 60%이상을 투자하는 “유진 Asia ex-Japan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수익증권에 90%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해외 채권은 외국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대비 해당 국가의 환율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상품 가입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p>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외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채권 및 어음 발행국가 및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회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원본 손실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원본손실위험	<p>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p>
환율변동 위험	<p>이 투자신탁을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p>
이자율 변동 위험	<p>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은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위험과 쿠폰의 재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 상환 만기를 가진 채권은 단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에 비하여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 대부분이 상환되는 시기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자본손실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은 일정 매기마다 수령하는 이자액(Coupon)을 다시 재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변동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중간에 수령하는 이자액을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동일하게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권시장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므로 만약 지급받은 이자액을 재투자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 투자수익이 예상수익보다</p>

	적어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투자신탁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인한 레버리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헷지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 투자할 경우,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파생상품의 계약만기시 동 계약을 차근원물 등으로 이전(Roll-over)하여 파생상품 운용을 지속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차근원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험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장내시장에 비해 장외시장거래는 개별적인 계약이므로 장내시장에서 참여자들에게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호장치가 제공되지 않으며,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장내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으므로 계약 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매연기 등으로 인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 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의 미래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RP매입 위험	짧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 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 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투자위험등급 : **3 등급 (중간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및 원본손실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채 및 고수익채권 등에 투자하는 해

외 집합투자기구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상품(자투자신탁)으로 신용 위험 및 시장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분산투자와 유동성을 갖춘 상품으로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으로 높은 이자소득을 추구하면서도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 책임 운용전문인력

(2012.07.20 현재)

성명	나이	직위	운 용 현 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윤성주	46	채권운용팀 이사	11	8,803억	장은증권(1992.01~1999.05) 제일선물(1999.06~1999.09) 現 유진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1999.10~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규모 산정시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6. 투자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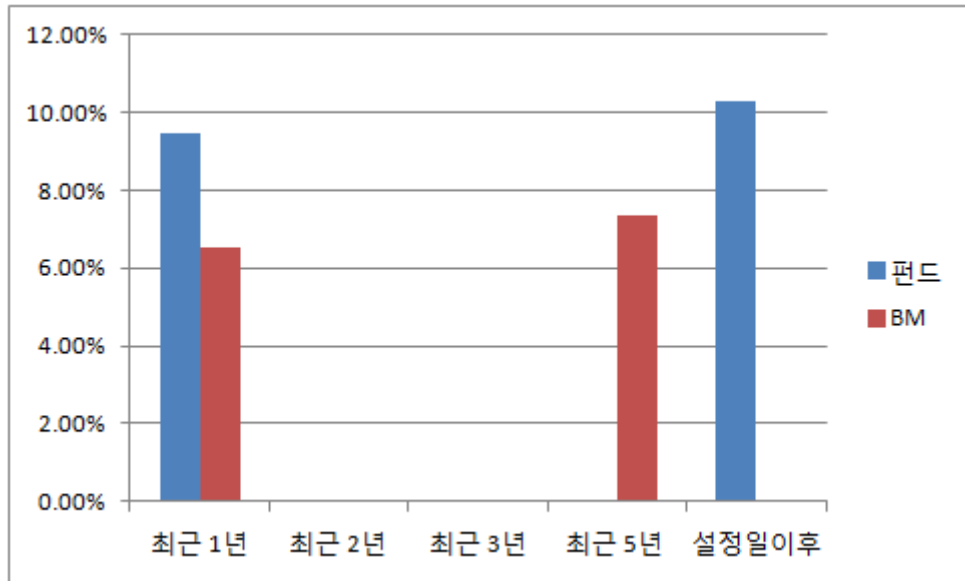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단위:%)

구분	최근 1년 (11.07.25~ 12.07.24)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1.06.20~ 12.07.24)
	운용펀드	9.46			
비교지수	6.54				7.36
	(11.07.25~12.07.24)				(11.07.25~12.07.24)
종류 A	7.84				7.84
비교지수	6.54				6.54
	(11.07.25~12.07.24)				(11.07.25~12.07.24)
종류 C	8.04				8.15
비교지수	6.54				7.36



주1)비교지수 : **HSBC Asian High Yield Bond Index, AHB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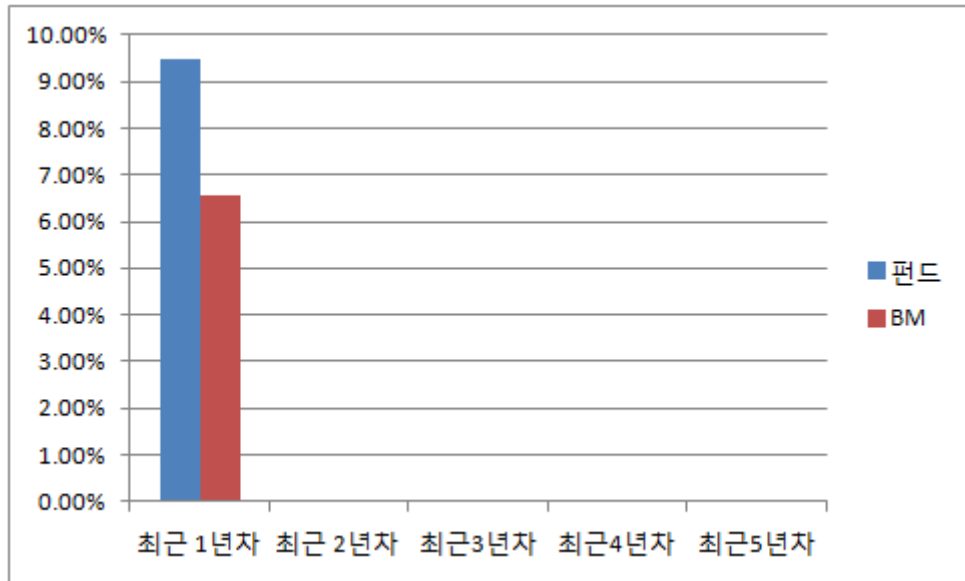
주2)연평균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단위:%)

구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1.07.25~12.07.24)				
운용펀드	9.46				
비교지수	6.54				
	(11.07.25~12.07.24)				
종류 A	7.84				
비교지수	6.54				
	(11.07.25~12.07.24)				
종류 C	8.04				
비교지수	6.54				



주1)비교지수 : **HSBC Asian High Yield Bond Index, AHBI**

주2)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4)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I 매입 · 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 급 비 율				부과시기
	Class A	Class C	Class E	Class F	
가입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온라인 (On-Line)판매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 RAP)계좌, 특정금전신탁 또는 집합투자기구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이내		-		매입 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른 이익금 기준 징수)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 시
기타비용	수익증권의 현물발행비용 등	사유발생 시

주1) 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2)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자가 최초 매입하는 Class A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되며, 납입금액의 1.00%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 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Class A	Class C	Class E	Class F	
집합투자업자	연 0.15%	연 0.15%	연 0.15%	연 0.15%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연 0.70%	연 1.00%	연 0.80%	연 0.05%	
신탁업자	연 0.05%	연 0.05%	연 0.05%	연 0.05%	
일반사무관리회사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총 보수	연 0.92%	연 1.22%	연 1.02%	연 0.27%	
기타비용	-	-	-	-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연 0.92%	연 1.22%	연 1.02%	연 0.27%	-
증권거래비용	-	-	-	-	사유발생시

※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의 기타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투 자 기 간			
		1 년 후	3 년 후	5 년 후	10 년 후
Class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3	281	473	968
		선취판매수수료 : 최초가입금액 1,000만원X 1.00%= 10만원			
Class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3	375	633	1,305
Class 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3	312	526	1,079
Class 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	81	136	27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주2) 이익금은 모두 채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 종류(Class)별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월이익분배 및 과세

(1) 월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익배분과는 별도로 매1개월 단위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합니다)으로 분배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이익으로부터 우선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분배금은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월 분배금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기준가격과 함께 과표 기준가격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과세효과로 인하여 실제로 최종 투자자가 받는 월 분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분배금

- 분배금: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추정 이자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분배금 기준일: 투자신탁 설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설정일 익월 20일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월 20일로 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합니다.
-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나. 분배금의 지급연기

-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분배금 미지급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분배금에 총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총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및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총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 분배금의 지급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분배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

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분배금 지급을 재개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분배금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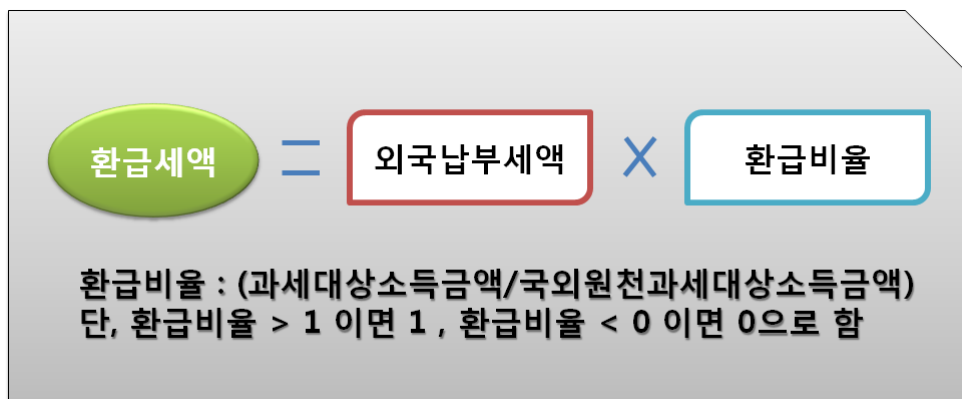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므로, 월이익분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분배금 중 과세대상인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분배금을 지급받는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 되므로 월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일반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2009년 최고한도 세율 35%, 2010년 최고한도 세율 33%)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2009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최고 한도세율 22%, 2010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최고 한도세율 20%)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천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 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 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 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 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 장소	판매회사 각 영업점,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 국경일, 공휴일 등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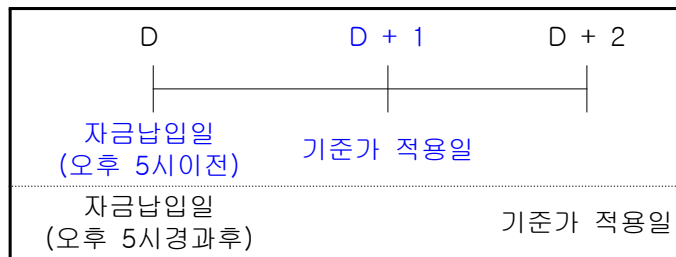
(2) 매입 및 환매절차

가.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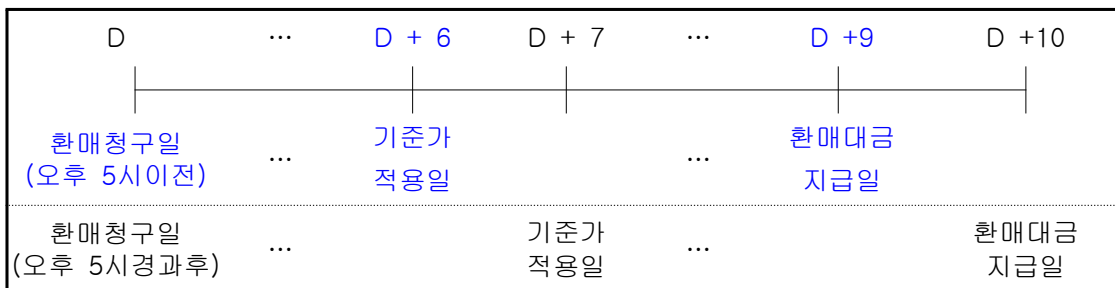
-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7영업일(D+6)**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관련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8영업일(D+7)**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1영업일(D+10)**에 관련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매입 및 환매절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원)

요약 대차대조표			
항목	제 1 기		
	2012.06.19		
운용자산	2,018,332,200		
증권	1,650,185,159		
현금 및 예치금	368,147,041		
자산총계	2,018,332,200		
운용부채			
기타부채	119,090		
부채총계			
원본	2,018,213,110		
이익잉여금	13,365,677		
자본총계	2,018,213,110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제 1 기		
	2012.06.19		
운용수익	16,080,347		
이자수익	98,133,608		
매매/평가차익(손)	-82,053,261		
운용비용	2,714,670		
기타비용	2,714,670		
당기순이익	13,365,677		

주1)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주2)요약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각 수익증권 종류별로 보수 및 비용 등의 차이에 따라 상이합니다.